

## 4.5.2 봉사장학생관리규정

제정 1996. 06. 19.

개정 2000. 04. 21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봉사장학생의 선발, 복무, 장학금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봉사장학생”이라 함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각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선발) 단순근로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본 대학교 각 부서장(학과장 포함)이 추천하는 학생을 선발한다.

제4조(복무) 봉사장학생은 근무기간 중 소속부서의 제반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본 대학교 각 부서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

제5조(근로기간) 봉사장학생은 한 학기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학생은 근로기간을 1학기 연장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.

제6조(근로기회의 공정) ① 봉사장학생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특별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근무토록 할 수 없다.

제7조(근로장학금의 신청과 지급) ① 각 부서장은 봉사장학생의 근무상황을 일일 점검 날인하여 1개월 단위로 학생복지처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② 봉사장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익월 5일까지 월별로 지급한다.

제8조(제명) 다음 각 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봉사장학생에서 제명할 수 있다.

1.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2.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
3.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
4. 봉사장학생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